

# 남양주보건소



# 남양주보건소 조치결과(계획) 총괄

## □ 지적사항별

(단위 : 건)

부 서 별	지 적 사 항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계	20	-	5	15
보건정책과	7	-	5	2
건강증진과	6	-	-	6
치매건강과	6	-	-	6
동부보건센터	1	-	-	1

## □ 조치사항별

(단위 : 건)

부 서 별	조 치 결 과 (계 획)				
	계	완 료	조치중	시기미도래	불 가
계	20	19	1	0	0
보건정책과	7	6	1	-	-
건강증진과	6	6	-	-	-
치매건강과	6	6	-	-	-
동부보건센터	1	1	-	-	-



# 【 보건정책과 】

## 목            록

-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 검토
-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철저 및 증설 요청
- 위원회 운영 철저
- 코로나19 확산대비를 위한 근무인력 배치 검토
- 진건보건지소 관리 운영 철저
- 폭염 대비 물품구입에 대한 시기 적절성 제고
- 해충 퇴치기의 동절기 관리 철저

##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 검토

### □ 지적사항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 검토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공공심야약국의 의약품 판매실적은 평균 일일 판매량 17건이며 일반의약품 판매의 비중이 98%로 의약품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병·의원 처방약 판매는 심야 시간대에 1개월 평균 9건 정도로 판매량이 미미함
- 2019~2020년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했던 외부약국은 2020.12.31.부로 운영 종료를 희망하여 지정취소되었으며, 이후에도 남양주시약사회를 통해 신청을 공모하였으나 현재까지 희망 신청 약국 없음

###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연중무휴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약국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 충족되어야 하나 전문인력(약사) 고용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소비자 이용 저조 및 적은 운영수당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공공심야약국 모집 시 지원 기피
- 야간 시간대 가정에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판매업소로 등록된 관내 편의점(497개소)에서 24시간 구입 가능하며 접근성이 양호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역할 대체
- 응급상황 시의 의약품 구매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15개의 평일 야간 및 연중무휴 약국 운영

###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약국 모집 도모

#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철저 및 증설 요청

## 지적사항

-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철저 및 증설 요청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 중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관리 및 점검 철저
  - 매년 1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점검 실시
    - ※ 의무설치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이상주택, 구급차 등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 관리책임자 선임(의무사항)
  - 관리책임자에게 관리사항 및 점검내용을 철저히 고지
- 관내 체육시설 설치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체지원으로 응급상황에 대비철저
  - 기 사업예산 확대 및 시비 확보 완료
  - 사업비: 본예산 9,500천원(기금50%, 시비50%), 1회추경 8,400천원(시비100%)
- 설치예정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7개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지소 4개소, 진료소 1개소
  - 관내 체육시설 3개소: 수요조사 후 지원 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관내 체육시설 등 응급상황 대비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원
- 유효기간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예정

일련번호	167
------	-----

# 위원회 운영 철지

## □ 지적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를 대행하는 경우 조례 개정할 사항이 아닌지 검토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 관련 추진 상황 시의회와 자료 공유

##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는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신설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관내 의료 관련 단체 의료인으로 경험이 풍부한 추천 회원 7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심의

## □ 문제점 및 대책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후 10일 이내 처리로 안전 발생에 따른 위원회 개최 예측 불가능하여 수시 보고의 어려움이 있음

## □ 향후계획

- 안전 발생 시 보건복지부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적합 여부 심의 철저

일련번호	168
------	-----

# 코로나19 확산대비를 위한 근무인력 배치 검토

## □ 지적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반 부서의 인원 차출보다는 근무 인력 증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자체인력 확보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142명)
- 외부충원 확보 : 중앙부처 파견명령 공무원 코로나19 대응 지원(72명)  
군인 및 경찰 역학조사 지원(8명)

## □ 문제점 및 대책

-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등 코로나19검사 기능의 변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의 변동성 등 대응지침의 변화와 전면 등교에 따른 학생환자 및 가족 확진자 지속발생, 확장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등 감염병 대응환경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인력의 시의적절한 배치에 어려움이 있음

## □ 향후계획

- 확진자 추이 모니터링 및 감염병 대응 체계 변화에 따른 선제적 인력수급 여건 지속 검토 및 안정적 인력배치 추진

일련번호	169
------	-----

# 진건보건지소 관리 운영 철저

## □ 지적사항

- 진건보건지소 이전 홍보 및 장애인 편의 시설 완비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 필요

##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보건지소 출입구 계단 턱 낮춤 설치 및 점자 안내판 도입 등 이동 약자(장애인 등) 편의 시설물 설치(완료)



##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서 감염병 발생상황과 대응환경의 안정화가 확보되는 등 지소 운영 여건이 조성될 시 신속히 운영 재개

## □ 향후계획

- 중단되었던 보건지소 운영 재개 시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현수막 게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

일련번호	170
------	-----

# 폭염 대비 물품구입에 대한 시기 적절성 제고

## 지적사항

폭염 대비 각종 시설물이나 물품 구입은 폭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구입할 것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폭염 대비 각종 시설물 및 노후화 등 관리상태 사전 점검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인력 수요 예측 및 비축물자 관리를 통한 사전 대비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선별진료소 현장 부서(건강증진과, 동부보건센터)와 협의하여 시기 적절한 물품 구입 예정

일련번호	171
------	-----

# 해충 퇴치기의 동절기 관리 철저

## 지적사항

- 퇴치약품이 동절기에 결빙되거나 동파할 수 있으므로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액상의 약품으로 인한 퇴치기 결빙 등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품제거 및 점검 등 실시
- 동절기 기간인 12월~3월 해충 퇴치기 청소 및 수리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해충 퇴치기의 작동여부 및 약품비치 등을 위한 전문업체 점검 : 4월
- 동절기 전 동파방지를 위한 해충퇴치기 점검 계획 : 11월

# 【 건강증진과 】

## 목 록

- 구강보건 서비스의 자체추진 마련
- 방문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출산률 제고를 위한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철저
- 코로나 19 장기화 대비 근무인력 증원방안 강구
-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조례 제정
- 관내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 관리자 철저

## 구강보건서비스의 자체추진 마련

### □ 지적사항

- 도 사업에만 국한되지 말고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시변호사 자문 내용 「법 또는 상위 조례에서 정한 필수 위임사항이 아니면 현재 경기도 조례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사업계획 예산 수립, 사업대상 선정)으로 추진하면 되므로 사업 대상이 중복되는 사항이라면 추가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떨어짐」
- ※ 구강보건사업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구강보건법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및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현재 취약계층(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MOU 체결(희망케어 센터 및 지역 치과의원)을 통한 치아건강나눔사업, 지역아동센터 구강건강 교실 운영,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 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구강건강서비스(치아건강체험교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성인·노인 구강보건사업, 어린이 불소 도포 등)를 제공하여 예방중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 향후계획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적절한 사업방식 병행(비대면·대면) 탄력 적용
- 구강보건교육 효과가 높은 학령기 아동 대상 교육 강화로 구강관리 습관 형성에 주력 및 취약계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예방중심사업 지속 추진
- 지역사회 자원간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연계, 다각적 방법을 통한 독려, 사업방향 개선

# 방문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 지적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방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안 강구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정례적 유선 모니터링 확대
  - 지원내용 : 건강행태개선 교육,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교육 등
  - 방문실적 : 등록관리가구수(2,284가구), 비대면 방문서비스(8,483회)
  - 재가암환자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 154명/605회
-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및 교육자료 비대면 전달
  - \* 대상자와 사전 약속된 장소에 물품 비치 후 알림
- 건강취약계층 집중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 건강문제 관리능력 향상
  - 건강측정용품(혈당측정기, 혈압계) 대여 및 사용법 교육 후 측정결과에 따른 맞춤 교육을 통한 대상자의 건강문제 관심 유도 및 만족도 증가
-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제공 : 12,557건/16,967건
  - 폭염·한파 피해 예방수칙 안내문 및 냉방·방한물품 비대면 전달, 기후특보 발효 시 문자 발송 및 건강상태 확인 전화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 향후계획

- 방문간호사의 통합사례회의 참여를 통한 대상자의 건강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통한 건강돌봄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및 건강교육 팸플릿 제작

# 출산을 제고를 위한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철저

## □ 지적사항

- 출산을 제고를 위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지원방안 검토
- 산모를 위한 건강 출산교실 등 교육지원 철저
- 신생아가 있는 곳에 대한 방역대책 철저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
  - 임신초기검사 및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모든 출산가정 대상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로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 줌 활용 비대면 강의로 태교, 분만법, 신생아관리, 모유수유 등 임신 출산 관련 교육 지원
- ※ 2022년 출산을 제고를 위하여 중앙차원의 첫만남이용권(200만원바우처) 및 영아수당(월30만원) 도입으로 출생아 1인당(출생 직후) 300만원 이상 지원

### [도입배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20.9.21.)

- 출산장려금이 해당지역 출산을 제고에 단기적·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다른 지자체 사이의 유출입을 유발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쟁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지역인구 감소 및 사회적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수당' 처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총괄할 필요 있음

- 산후조리원 방역점검 및 종사자 감염예방관리
  - 시설위생 및 방역수칙 관련 매분기(연4회) 현장점검
  - 코로나19 관련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증상여부 일일 모니터링
  - 코로나19 방역 행동수칙(예방접종 및 선제검사) 배포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 향후계획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대면 및 비대면 사업 병행 추진
- 산후조리원 현장점검을 통한 방역 및 운영실태 관리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근무인력 증원방안 강구

## □ 지적사항

-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반 부서의 인원차출 보다는 근무인력 증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코로나19 기간제근로자 행정인력 채용 추진
  - 재난관리기금으로 채용 중인 기간제근로자 9명 ‘22년 3월 계약종료 후 업무 공백 방지
  - ‘21년 12월 ~ ‘22년 3월: 채용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 완료(총무과, 기획예산과) 후 코로나19 기간제근로자 16명 채용 시행
- 선별진료소(PCR검사,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 수탁의료기관 (의)GC녹십자의료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검체채취 인력투입
  -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검체채취 의료인력 지원
  - 기간제근로자 8명 행정인력 투입
- 임시선별검사소(PCR검사, 신속항원검사)
  - 군부대 상시 행정인력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검체채취 의료인력 지원
  - 기간제근로자 8명 행정인력 투입
- 보건소 일반진료 및 제증명 업무 중단하여 코로나19 대응 업무 투입
  - ※보건정책과-8703(2022.2.18.)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유지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 향후계획

-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예방
- 코로나19 대체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일상적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

#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조례 제정

## □ 지적사항

-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부서차원에서 인식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에 매진할 것
- 시 자체적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금 확대 등 적극적인 출산율 저하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의회와의 추진사업 공유를 통해 필요예산 편성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시 자체 출산장려 추진사업
    - 임신 전 검사 / 임신 초기검사
    - 출산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중 활용 비대면 강의)
    - 출산장려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소득기준 초과 가구 지원
  - 출산장려금 확대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출산율 증가효과에 대한 한계, 중앙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인 첫만남이용권 도입에 따른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통합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검토됨
- ※ 2022년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중앙차원의 첫만남이용권(200만원바우처) 및 영아수당(월30만원) 도입으로 출생아 1인당(출생 직후) 300만원 이상 지원

### [도입배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20.9.21.)

- 출산장려금이 해당지역 출산율 제고에 단기적·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다른 지자체 사이의 유출입을 유발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쟁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지역인구 감소 및 사회적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수당' 처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총괄할 필요 있음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 향후계획

- 추후 중앙차원의 출산장려 지원 사업의 정책변동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조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

## 관내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 관리자 철저

### 지적사항

- 대사성 환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직접 가고 있는지 관리 감독 철저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지도점검을 실시(정기·수시점검)
  - 과목별 예산 집행내역
  - 사업 추진실적 및 등록대상자 관리 현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보건교육 및 홍보 현황
  - 복무상황 점검
- 워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교육 및 홍보
  - 오프라인 1:1 교육(고혈압당뇨 교육, 영양 교육, 운동 교육)
  -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튜브 : 교육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
    - 온라인 교육(고당이.kr) : 고혈압당뇨 교육
  - 질환자의 건강행태개선사업(513명 참여)
  - 레드서클 온라인 캠페인(1,826명 참여)
-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안저검사 실시(17개소 안과 참여)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매분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에 대한 운영 관리 철저
- 고혈압·당뇨병 등록 및 안내 서비스에 대한 관리 체계 점검



# 【 치매건강과 】

## 목            록

-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건의
- 소관 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 건의
-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 치매 진단 및 치매 지원업무 추진 철저
- 치매안심센터 기능 활성화 강조
- 공공기관 CCTV 운영규정에 맞춘 CCTV 관리 건의

#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건의

## 지적사항

-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철저로 자살률 감소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기 바람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자살 예방 사업 진행 및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관리
  -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인식 및 대응 비대면 교육·상담 확산
  -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 교육 확대 시행
  -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유관기관 통합체계 구축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자살 예방 및 자살위기 개입으로 자살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소관 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 건의

### 지적사항

- 소관 3개 위원회의 기존 위원 결원 시 신규 위원 발굴 및 위촉할 수 있도록 건의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 위원회 현황

- 남양주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위촉기간 2년, 2023.6.19. 위촉예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 위촉기간 2년, '23.11.18. 위촉예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 : 위촉기간 2년, '22.12.13. 위촉예정

- 향후 신규 위원 위촉시 관내 남양주시의사회 및 가족 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추천 받아 위원회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음.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소관 3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종료 후 결원 발생 시 신규위원 발굴 및 위촉

#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건의

## 지적사항

-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청년층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예방사업 추진
  - 관내 청년 대상 일반 상담 : 3,857건
  - 관내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 374건
  - 찾아가는 심리지원 운영
  -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청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
  - 청년층 맞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정신질환 발병 예방 및 만성화 방지
  - 사업비 : 100,000천원(국50/도7.5/시42.5%)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청년 조기중재 센터 7월 개소 예정
- 청년층 대상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실시

# 치매 진단 및 치매 지원업무 추진 철저

## □ 지적사항

-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및 인식표 의무 설치검토
- 치매환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주민홍보 진행
  - 코로나-19 확산세로 60세 이상 대상자 조기검진 안내문 우편발송
-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및 인식표 의무설치 검토
  - 최종 치매진단 후 등록 대상자 지문등록 진행
  - 인식표 요청자에 배부
- 치매환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키트, 위생소모품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 향후계획

- 코로나19 확산에도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 환자에 대한 교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물품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치매안심센터 기능 활성화 강조

### 지적사항

-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조
- 관심도 제고를 통한 조례제정 및 선도적 사업추진 , 예산편성 노력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조례 전부개정 진행 (의회통과)
  - 2022. 2.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2022. 3.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
-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예산확보
  -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 치매관리 공급 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연구 및 기술개발
  -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치매관리사업 관심도 제고 및 선도적 사업 추진
- 장기발전방향에 맞춘 치매안심센터 본연의 기능과 역할 활성화 도모

## 공공기관 CCTV 운영규정에 맞춘 CCTV관리 건의

### 지적사항

- 한달 간의 저장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CCTV에 걸맞는 정신건강병원 CCTV 저장기간 확보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관내 폐쇄병동 운영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점검
  - 5개 기관 총 142대 점검 완료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4.개정) 배포
  - 기관별 관리책임자 지정
  -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관 조치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반기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cctv 설치·운영 현황 점검



# 【 동부보건센터 】

## 목 록

- 동부보건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 철저

일련번호	184
------	-----

# 동부보건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 철저

## □ 지적사항

- 코로나19 검사나 기타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시민 안내를 위해 홍보기획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대민홍보 철저

##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남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 남양주시블로그, 내손에 남양주 등 홍보기획관과 연계를 통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보건사업 적극 홍보
-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동부보건센터 ‘건강리더단’ band를 통한 월 2회 이상 보건 소식 및 사업 안내
- 동부지역 코로나19 검사수요 증가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운영사항을 배너 및 플래카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확대
-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사업 홍보물 게시 및 배부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 향후계획

- 동부보건센터의 보건사업에 대하여 홍보기획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확대

남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 2022.3.16.

